# 건축구조심의의 표준화 방안





박대영 모던구조 대표

염환석 광주대학교 교수

# ] 서론

## 1.1 머리말

현행 우리나라의 건축법과 건축사법에서는 모든 건축설계와 감리가 건축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, 건축구조설계에 대한 책임과 권한 또한 건축사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. 따라서 구조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자가 건축사이고, 내진설계 확인을 건축구조기술사와 협의 없이 건축사가 확인하는 것만으로가능한 현재 건축법과 시행령의 건축구조업무에 관한 규정은, 국민의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하는 건축구조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다. 또다른 측면에서 보면, 근래대학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변화된 교육과정을 보면 건축교육이건축학과 건축공학으로 이미 분화되어 그 교과과정이 과거의 통합된과정과는 전혀 다른 현실에서 최근 그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으므로이에 맞도록 점진적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.

건축구조업무는 1) 건축계획설계 초기단계부터 구조계획을 수행하고, 2) 건축설계가 진행되는 매단계마다 구조계획 및 구조설계를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구조도면 및 시방서가 작성되어야 하고, 3)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는 구조기술자가 작성, 확인하여야 하며, 4) 시공중 골조시공 기간에는 구조기술자가 참여하여야 하고, 5) 시공 중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이에 따른 구조기술자의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.

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축심의 중 건축구조심의는 각 시도별로, 심의위원별로 현격한 차이가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. 일관성이 결여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근본적인 이유는 건축구조업무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. 건축구

조심의의 일관성이 결여되면 구조심의자와 피심의자의 혼란이 야기되고, 구조심의 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될 수도 있으므로 이의 보완대책으로 전국적인 건축구조심의의 표준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.

건축구조심의를 전국적으로 표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1) 건축구조설계의 업무가 건축구조기술자에 의해 수행되어,건축구조업무의 본연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할 때의 합리적인 건축구조심의 표준화 방안과, 2) 현재의 건축법 및 시행령 하에서의 건축구조심의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.

#### 1.2 건축구조심의의 현주소

## 현재의 건축구조심의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.

- 1) 지역별, 구조심의위원별 심의의 일관성이 결여되어있어 심의의 혼란이 야기되고, 구조에서 중요한 부분이 구조심의 시 누락될 수 있다.
- 2) 건축심의시 형식적인 건축구조계획서만 제출되거나 구조도면이 부실하여 건축구조심의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.
- 3) 건축구조가 건축설계와 건축시공에 비해 그 중요성이 저평가되어, 건축구조심의의 취지가 다소 왜곡되어 있다.
- 4) 현 제도 하에서는 건축구조기술자가 건축설계자의 협업자로 인 식되지 못하고, 또한 건축구조기술자가 결정해야할 사항을 일부 분은 시공기술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어 심의를 받는 건축구조 기술자의 자긍심이 저하되어있다.

## 1.3 건축구조심의 개선방향

건축구조심의를 표준화하는데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 있지

만, 건축구조심의를 개선하는 방향은 우선 건축구조심의의 절차를 표준화하고, 건축구조심의의 내용을 표준화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사료된다.

# 2 건축구조심의 제도 개선 방향

## 2.1 합리적인 건축구조심의 표준화 방안

건축구조설계에 관한 업무가 건축구조 기술자에 의해 수행되어 건축구조기술자에 의한 건축구조업무 본연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건축법 및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그에 따라 건축구조심의도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. 건축설계의 초기단계부터 건축구조설계도 같이 진행되어왔다는 것을 전제로, 건축구조심의 절차와 내용의 표준화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.

## 2.1.1 합리적인 건축구조심의 절차 표준화 방안

- 건축계획심의 전 건축구조 사전심의
  - 건축구조심의에 필요한 충분한 도서 제출
  - 건축구조설계자와 건축계획설계자의 설명
  - 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건축구조계획서, 구조계산서 및 구조도면 의 검토
- 건축계획심의는 사전심의 시 건축계획 및 건축구조 지적사항에 대해 수정 또는 보완여부 확인
- 미보완사항에 대해서 건축계획심의 후 건축허가(또는 착공) 전까 지 수정 또는 보완여부 확인
- 건축계획심의결과 건축계획의 변경 시 그에 따른 건축구조심의

## 2.1.2 합리적인 건축구조심의 내용 표준화 방안

- 제출도서
  - 건축도면, 구조계획서, 구조계산서, 구조도면, 지반조사서, 필 요시 풍동실험성적서 등
- 건축구조기준 준수여부 검토
- 구조도면에 구조기술자의 날인 확인
- 건축계획심의(건축도면을 충분히 이해하고 불합리한 점을 지적)
- 구조계획의 합리성 검토(필요시 Delay Joint와 Expansion Joint 의 합리적인 배치 등)
- 건축도면과 구조도면을 비교하여 구조설계의 적정성 검토
- 구조상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구조상세도면의 제출을 요구 이에 대한 구조기술자의 날인 요청
- 골조시공은 구조기술자가 구조감리를 수행토록 한다

- 시공 중 구조변경사항 발생하면 이에 따른 구조설계 수행
- 시공 중 구조기술자가 주요 구조부분의 시공도 및 시공 확인
- 준공도면에 구조기술자의 날인요청(구조기술자에 의한 구조감리 수행을 전제로)

# 2.2 현재의 건축법 및 시행령 하에서의 건축구조심의 표준화 방안 1

현재의 건축법 및 시행령 하에서, 인천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등의 건축심의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축구조 심의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.

## 2.2.1 현재의 건축법 및 시행령 하에서 건축구조심의 절차 표준화 방안

- 건축계획심의 전 건축구조 사전심의
  - 사전심의 전 건축구조계획서 및 구조도면에 구조기술자의 날인 요청
  - 사전심의 전 건축구조심의에 필요한 충분한 도서 제출 요청
  - 사전심의 시 건축구조설계자와 건축계획설계자의 설명 요청
- 건축계획심의는 사전심의 시 건축계획 및 건축구조 지적사항에 대해 수정 또는 보완여부 확인
- 미보완사항에 대해서 건축계획심의 후 건축허가(또는 착공) 전까 지 수정 또는 보완여부 확인
- 건축계획심의결과 건축계획의 변경 시 그에 따른 건축구조심의 요청

## 2.2.2 현재의 건축법 및 시행령 하에서 건축구조심의 내용 표준화 방안

- 제출도서
  - 건축도면, 구조계획서, 구조계산서, 구조도면, 지반조사서, 필 요시 풍 동실험성적서 등
- 건축구조기준 준수여부 검토
- 구조도면에 구조기술자의 날인 확인
- 건축계획심의(건축도면을 충분히 이해하고 불합리한 점을 지적)
- 구조계획의 합리성 검토(필요 시 Delay Joint와 Expansion Joint의 합리적인 배치 등)
- 건축도면과 구조도면을 비교하여 구조설계의 적정성 검토
- 구조상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구조상세도면의 제출을 요구 이에 대한 구조기술자의 날인 요청
- 골조시공 중 구조기술자에 의한 비상주 구조감리 요청
  - 시공 중 구조변경사항 발생하면 이에 따른 구조설계 수행
  - 시공 중 구조기술자가 주요 구조부분의 시공도 및 시공 확인
- 준공도면에 구조기술자의 날인 요청(구조기술자에 의한 구조감리 수행을 전제로)

## 2.3 현재의 건축법 및 시행령 하에서 건축구조심의 표준화 방안 2

현재의 건축법 및 시행령 하에서 현행 건축사업의 진행실태를 고려하여 건축구조기술자 입장에서 개선된 건축구조심의 표준화 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.

# 2.3.1 현재의 건축법 및 시행령 하에서 건축구조심의 절차 표준화 방안

- 건축계획심의 시 건축도면, 건축구조계획서, 지반조사서 배포
- 건축계획심의 시 구조계획심의
  - 건축계획 및 구조설계자의 설명
  - 건축계획 및 건축구조 지적사항에 대해 수정 및 보완가능여부 설명
- 건축계획안이 확정된 후 건축계획심의와 별도의 구조설계심의
  - 구조계산서 및 구조도면에 구조기술자의 날인 요청
  - 구조설계심의에 필요한 충분한 도서 제출 요청
  - 건축구조설계자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요청
  - 건축계획 및 건축구조 지적사항에 대해 수정 및 보완 가능여부 설명
- 미보완사항에 대해서 건축계획심의 후 착공 전까지 수정 또는 보 완 여부 확인

# 2.3.2 현재의 건축법 및 시행령 하에서 건축구조심의 내용 표준화 방안

- 건축계획심의 시 제출도서
  - 건축도면, 건축구조계획서, 지반조사서
- 건축계획안이 확정된 후 건축계획심의와 별도의 구조설계심의 시 제출 도서
  - 건축도면, 구조계산서, 구조도면, 지반조사서, 필요 시 풍동실 험성적서 등
- 건축구조기준 준수여부 검토
- 구조도면에 구조기술자의 날인 확인
- 건축계획심의(건축도면을 충분히 이해하고 불합리한 점을 지적)
- 구조계획의 합리성 검토(필요시 Delay Joint와 Expansion Joint 의 합리적인 배치 등)
- 건축도면과 구조도면을 비교하여 구조설계의 적정성 검토
- 구조상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구조상세도면의 제출을 요구 이에 대한 구조기술자의 날인 요청
- 골조시공 중 구조기술자에 의한 비상주 구조감리 필요성 여부
  - 시공 중 구조변경사항 발생하면 이에 따른 구조검토 수행
  - 시공 중 구조기술자가 주요 구조부분의 시공도 및 시공 확인
- 풍동실험, 수직부재 부등축소량 해석 및 현장계측의 필요성 여부 검토

#### 2.4 현재의 건축법 및 시행령 하에서 건축구조심의 표준화 방안 3

건축구조기술자 입장에서 건축구조업무의 단순화를 위한 건축구조 심의 표준화 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.

## 2.4.1 현재의 건축법 및 시행령 하에서 건축구조심의 절차 표준화 방안

- 건축계획심의 전 건축도면, 건축구조계획서, 주요 구조부위 구조 도면 배포
- 건축계획심의
  - 건축계획설계자의 설명
  - 건축계획 및 건축구조 지적사항에 대해 수정 및 보완 가능여부 설명
- 미보완사항에 대해서 건축계획심의 후 착공 전까지 수정 또는 보 완 여부 확인

# 현재의 건축법 및 시행령 하에서 건축구조심의 내용 표준화 방안

- 건축계획심의 시 제출도서
  - 건축도면, 건축구조계획서, 주요 구조부 구조도면
- 건축구조기준 준수여부 확인
- 건축계획심의(건축도면을 충분히 이해하고 불합리한 점을 지적)
- 구조계획의 합리성 검토(필요 시 Delay Joint와 Expansion Joint의 합리적인 배치 등)
- 건축도면과 구조도면을 비교하여 구조설계의 적정성 검토

# 3 제안된 건축구조심의 표준화 방안에 대한 비교 검토

제2장에서 제시한 4가지 건축구조심의 표준화 안에 대해 비교 검 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## 3.1 합리적인 건축구조심의 표준화 방안

- 건축구조업무 본연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건축법 및 시행 령의 개정이 선결
- 합리적인 건축구조심의로서 건축계획심의와 보조를 맞추고 있음
- 건축구조기술자의 자긍심 고취

# 3.2 현재의 건축법 및 시행령 하에서 건축구조심의 표준화 방안 1

- 장점
  - 건축구조심의위원의 입장에서 본 건축구조심의로서 건축계획 심의와 보조를 맞추고 있음

- 현재 인천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등의 건축심의에서 시행하고 있고, 일부(건축구조감리 등)는 노력 중에 있음
- 건축심의 전 분야에 걸쳐 사전심의를 하고 있고 이 사전심의는 효율적인 본 건축계획심의를 위한 것임

#### - 단점

- 타 시도에는 없는 사전심의의 번거로움
- 건축구조도면의 검토날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용역대가의 비현 실성
- 준공도면 날인은 구조기술자에 의한 구조감리의 제도화, 감리 비의 현실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행할 수 없음

## 3.3 현재의 건축법 및 시행령 하에서 건축구조심의 표준화 방안 2

- 장점
  - 건축구조기술무자 입장에서 개선된 건축구조심의로서 현행 건 축사 업의 진행실태를 고려하고 있음
  - 현행 건설산업의 진행상 건축계획심의 후에도 건축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는 실태를 고려한다면 건축계획안 심의 확정 후 별 도의 건축구조심의가 바람직함

#### – 단점

- 건축계획심의 후 별도의 건축구조심의를 함으로써 건축구조심 의 위원과 건축구조기술자의 이중적 시간부담
- 건축구조도면의 검토날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용역대가의 비현실성

## 3.4 현재의 건축법 및 시행령 하에서 건축구조심의 표준화 방안 3

- 장점
  - 건축구조기술자 입장에서 본 건축구조심의로서 건축구조업무 의 단순화
  - 건축구조기술자의 구조설계업무 시간과 비용의 절감
- 단점
  - 건축구조설계의 부실화로 인한 건축구조심의의 부실 가능성 초래

# 4 결론

건축구조심의 표준화 방안에 대한 4가지 안을 제시하고 이 방안을 서로 비교 검토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.

1) 현재의 건축법 및 시행령이 건축구조업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만 합리적으로 건축구조심의를 표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.

- 2) 현재의 건축법 및 시행령 하에서 건축구조심의 표준화 방안 1안 은 건축구조심의의 개선은 가능하나, 현재의 건축법 및 시행령의 건축구조업무에 관한 규정하에서는 건축구조분야 전문가인구조기술자가 심의에 적극 참여할수 있는 기회가 근본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많은 단점이 도출되고 있다.
- 3) 현재의 건축법 및 시행령 하에서 건축구조심의 표준화 방안 2안은 이중적 시간부담등 일부 단점이 있으나 현행의 건축구조업무에 관한 규정하에서 개선가능한 건축구조심의 표준화 방안으로 판단된다.
- 4) 현재의 건축법 및 시행령 하에서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축구조심의 표준화 방안 3은 건축구조심의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.
- 5) 현재의 건축법 및 시행령 하에서는 건축구조심의 표준화 방안 1 이나 2 수준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, 보다 근본적 으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건축법과 건축사 법은 시대에 맞게 단계별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.

# 5 건축구조심의 표준화에 따른 기대효과

건축구조심의를 전국적으로 표준화하면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.

- 1) 건축구조심의의 일관성 확보
- 2) 건축물의 안전성과 경제성 확보
- 3) 건축구조업무의 부실 방지
- 4) 건축구조기술자의 업무 효율화
- 5) 건축구조기술자의 책임감 증진
- 6) 건축구조업무 관련 법규 합리적 개정

## 6 기타

건축구조심의 및 건축구조업무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부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.

- 1) 건축구조심의자가 구조심의를 심도있게 하기위해서는 구조실무 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 증진이 요망되며 건축구조 기술자들의 사명감이 고취되어야 한다.
- 2) 건축구조심의 표준화방안이 효과적으로 조속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건교부의 업무지침 등으로 각 지자체에 하달되어야 하고,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어야 한다.
- 3) 건축교육이 건축학과 건축공학으로 이미 분화되었고, 이렇게 분화된 건축공학교육에 의한 건축기사제도를 재정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.